



87th December 2015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CONTENTS

WHERE IS GRACE CHANG?

Frame,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COVER STORY

2015 년 관세무역 관련 10 대 뉴스

FTA NEWS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⑦

자유무역지역 원상태 반출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2015 년 제 1 회 관세평가협의회 안건)

신한 ISSUE

한국·베트남 경제포럼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이사 강연

ABOUT

WRITERS



WHERE IS GRACE CHANG?

 **Frame,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장승희
대표 관세사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의 연주를 보셨는지요? 혼신의 힘을 쏟으며 연주하는 모습은 음악문외한에게도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콩쿠르에 나가기로 결심한 후 휴대폰을 없애고 카톡과 문자도 끊고 쇼팽만 생각하고 연주하며 9개월간 쇼팽처럼 살면서 집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갖고 있는 창(frame)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많은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어떤 관점으로 삶과 사물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은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원으로 평생 거리를 청소하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월급이 많은 직업도 아니었지만 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짓는지 질문하는 젊은이에게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일이 ‘돈벌이’나 ‘거리청소’가 아닌 ‘지구를 청소하는 일’로 프레임을 한 것입니다.”**

“유명인이 되기보단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자기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우쭐할 수도 있건만 음악이 우선인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나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보게 되는 the overview effect 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 프레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Cover Story 는 2015 년 관세무역관련 10 대 뉴스입니다. 한-중 FTA,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미디어 판권까지 다양한 뉴스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FTA News 는 한-아세안 FTA 의 상품무역협정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개정된 관세청 고시 소식과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등 고객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한 건물 안의 여러 층에 사방으로 난 창들은 각기 다른 모습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많은 창 중에서 최고의 전망을 가진 창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많은 프레임들 중에서 최선의 것들을 찾아갑니다.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며 이 방 저 방을 들어가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 월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최상의 프레임으로 재무장하시는 의미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인철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10.

** 최인철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23.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Cover
Story

2015년 관세무역 관련 10대 뉴스

2015년 한 해도 지나 이제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관세 업계에 크고 작은 이슈들을 모아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신설된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2015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한 - 중 FTA 정식서명

금년 6월 1일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양국 간 협상을 마무리하여 연내 발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한편, 관세청에서도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對중국 수출을 지원하고자 한-중 FTA 가인증수출자 제도를 만들어 8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간 줄다리기로 인해 국회 비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연내 발효는 힘들어 보입니다.

2.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올해는 서울 시내 면세점 쟁탈전으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을 선정하는 7월 1차 대전에서는 HDC 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전날 주가가 급등하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뒤이은 11월 2차대전에서는 올해 영업권이 만료되는 3곳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자인 SK 네트웍스는 워커히 면세점을, 롯데는 월드타워점을 지키지 못하고 신세계와 두산에 면세사업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면세점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영업상 별 하자가 없는 한 10년단위로 특허가 갱신된 것과 달리,

현행제도는 5년마다 제로베이스에서 면세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사업 연속성의 보장이 어려워 다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수입 물품 원산지 글자크기 의무화 철회

관세청은 올해 1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수입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글자크기 의무화를 철회하고 판독하기 쉬운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도록 올 11월 고시를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4. 개별소비세 인하 및 취소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의 30%를 인하하고, 고급 가방, 시계, 가구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존 200만원이 아닌 500만원부터 개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소세를 낮췄음에도 제품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고급 가방, 시계, 가구 등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500만원에서 다시 200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5. 경정청구기간 확대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3년의 청구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2013년 관세부과제척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음에도, 경정청구기간은 3년에 머물러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이 일치되지 않아 납세자와의 형평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덜 환급받았을 경우에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경정청구기간	3년	5년	개정 시행 2015.1.1
관세부과제척기간	2년	5년	개정 시행 2013.8.13

6. 가산세 이율 인상

수입신고일 기준 2015년 2월 6일 건부터, 관세 가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적용 이자율이 종전 1일 0.013%에서 1일 0.03%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관세-내국세 간 가산세 부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내국세의 가산세 기준 적용 이자율(1일 0.03%)에 맞춘 것입니다.

7.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올해 5월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이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되어 3년 또는 2년마다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업체별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5년
품목별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2년	

8.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의 예외 조항 신설

APTA, GSP, TNDC, GSTP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 2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신고 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이후에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

야만 신설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이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인정되는 FTA 사후적용 신청과는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9.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

지난 1월 1일부터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 대책으로 마련한 화평법 및 화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령이며,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화평법 및 화관법이 시행되었지만, 재정 및 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 디아지오 판결

2009년부터 시작된 주류수입업체 디아지오 코리아와 관세청과의 전쟁이 올해 1월 마무리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디아지오가 수입가를 경쟁사 절반 수준으로 낮춰 신고하였다며 5000억원 대의 관세를 매겼고, 이에 디아지오가 불복하면서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디아지오와 관세청이 수용하면서 최대 3000억원 가량만 납부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관세청은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다국적기업과 거액의 관세소송을 벌이면서, 제2의 디아지오를 막기 위해 대전 본청에 '특별쟁송팀'을 신설하고 일선 세관에 '다국적기업 불복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쟁송 수행 체계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혜란

hrkim@customsservice.co.kr

FTA News

한-아세안 FTA 상품 무역협정 개정

1. 개요

지난 8 월 23 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개정 내용이 20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의 내용은 크게 WTO 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역내부가가치제도의 개선, 상호주의 제도의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의 구체화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WTO 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각 국가의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들을 제거하여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더욱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원활화협정이 2014 년 WTO 에서 타결되었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데 WTO 회원국간의 FTA 의 개방수준이 무역원활화협정에 비하여 낮은 경우 이를 FTA 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금번 한-아세안 FTA 의 개정안 중에서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부분은 '투명성', '사전심사', '문의처' 및 '원산지증명서'이다. '투명성'은 수출입 관련 법령, 규제 정보 및 결정과 심사에 대한 사항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문의처'는 관세 및 무역사안과 관련한 하나의 문의처를 지정 또는 신설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원산지증명서'는 그간 일부 국가에서 거부되어왔던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사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3. 역내부가가치제도의 개선

한-아세안 FTA 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역내부가가치기준은 집적법과 공제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계산방식의 결정은 각국의 관세 당국이 정하여 해당 방식에 의해 원산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RVC = \frac{\text{상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FOB)}} \times 100$$

집적법(BU, Build-Up Method)

$$RVC = \frac{\text{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FOB)}} \times 100$$

[역내부가가치의 계산방법]

수출자는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집적법이나 공제법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결정된 산정기준은 동일 회계연도 동안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 상호주의제도의 개선

상호주의제도란 일정 조건 하에서 상대국이 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상대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을 '상호대응세율'이라고 한다. FTA에서는 물품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구분하여 일반품목의 경우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반대로 관세인하를 유보하거나 제한적으로 관세를 인한다. 이때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면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자국은 일반품목, 상대국은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경우 자국도 상대국이 부여하는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관세율을 상호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이루고자 하는 FTA의 기본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상호대응세율제도를 국가에 따라 폐지하거나 적용품목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및 베트남은 상호대응세율을 포기하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태국은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의 증가를 제한하게 되어 국가간 상품무역의 개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의 구체화

우리나라가 맺은 다른 FTA와는 다르게 한-아세안 FTA는 관세양허스케줄을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10개국이 일반품목,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에 대해 상이한 형태의 관세인하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협정세율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세율의 파악을 위해 늦지 않게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케줄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금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별 연도에 따른 관세철폐 일정을 구체화하였고 이에 따라 관세율의 통보 규정은 삭제처리 되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현

(leedh@customsservice.co.kr)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발행시 주의!**

한-미 FTA는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 또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하나, 최근 **수입자가 발급한 한-미 FTA C/O에 대한 심사가 강화 및 추정사례도 빈번**해지고 있어 실제 적용 시 큰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자가 C/O를 발급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과 증명서 발급대장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FTA 특례법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 글자크기 신축적용 가이드라인 (안) 의견조회 결과 반영
-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2.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표시 8포인트 글자크기 적용대상 축소 완화(제4조)
 - (기존) 원산지표시대상 공산품과 농수산품에 일괄 적용
 - (개선) 공산품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농수산품은 규정 유지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정비(제18조)
 - 고시와 지침에 각각 규정된 고발·

- 송치관련 조문을 고시로 일원화
 -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의 고발 규정(제6조) 삭제
 - 허위표시 외의 중요 위반행위 (손상·변경, 오인표시)에 대하여도 벌칙 적용 강화(국회 지적에 따른 고발기준 조정)
-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1.9.) 사항 반영
 - 철근 및 합금강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 추가(별표 2)
 - (철근 등) HS 7214,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1ton 기준)
 - (합금강류) HS 7225 7226 7228, 현품에 예외적인 표시 허용

- 「관세법시행령」원산지확인위원회(제236조의4) 개정사항 반영 등 (제52조)
 - 위원확대(10인 이하 → 20명 이상 30명 이하) 개정사항('15.2.6) 반영
 -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방지를 위한 사전진단 실시 및 서약서 징구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해촉 기준' 반영

3. 시행일자 : 2015. 11. 16.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s Opinions>>

2015년 1월 30일 원산지표시 글자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수입업체와의 갈등 소지 상존한다는 이유로 글자크기를 기본 8포인트 이상으로 지정하고 물품의 형태나 크기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동 고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약 11개월 만에 공산품의 경우 통상문제 야기 가능성이 높고, 개별물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글자크기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원산지를 미표시 하거나 손상, 변경하는 등 원산지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최대 3억 원),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가해됩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 위험성이 있는 업체의 경우, 수입신고 이전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사전 확인하여 처벌 위험을 회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고시 미반영 사항 및 규제개혁과제 채택내용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가족 동반의 인정범위 명확화(제2조)
 - 전년도 고시개정 당시 이사자 동반가족의 인정 범위가 누락되어 구 고시(제2013-41호)의 정의를 재반영
-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제4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대한 고시
 -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이사자의 거주이전이 불가피한 때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사물품

으로 인정

- 이사물품 자동차 과세가격 결정기준 개선(제7조)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맞추어 이사물품 자동차 과세가격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규정 개선
 - (현행) 등록일부터 입국일까지의 가치감소분을 공제
 - (개정)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가치감소분을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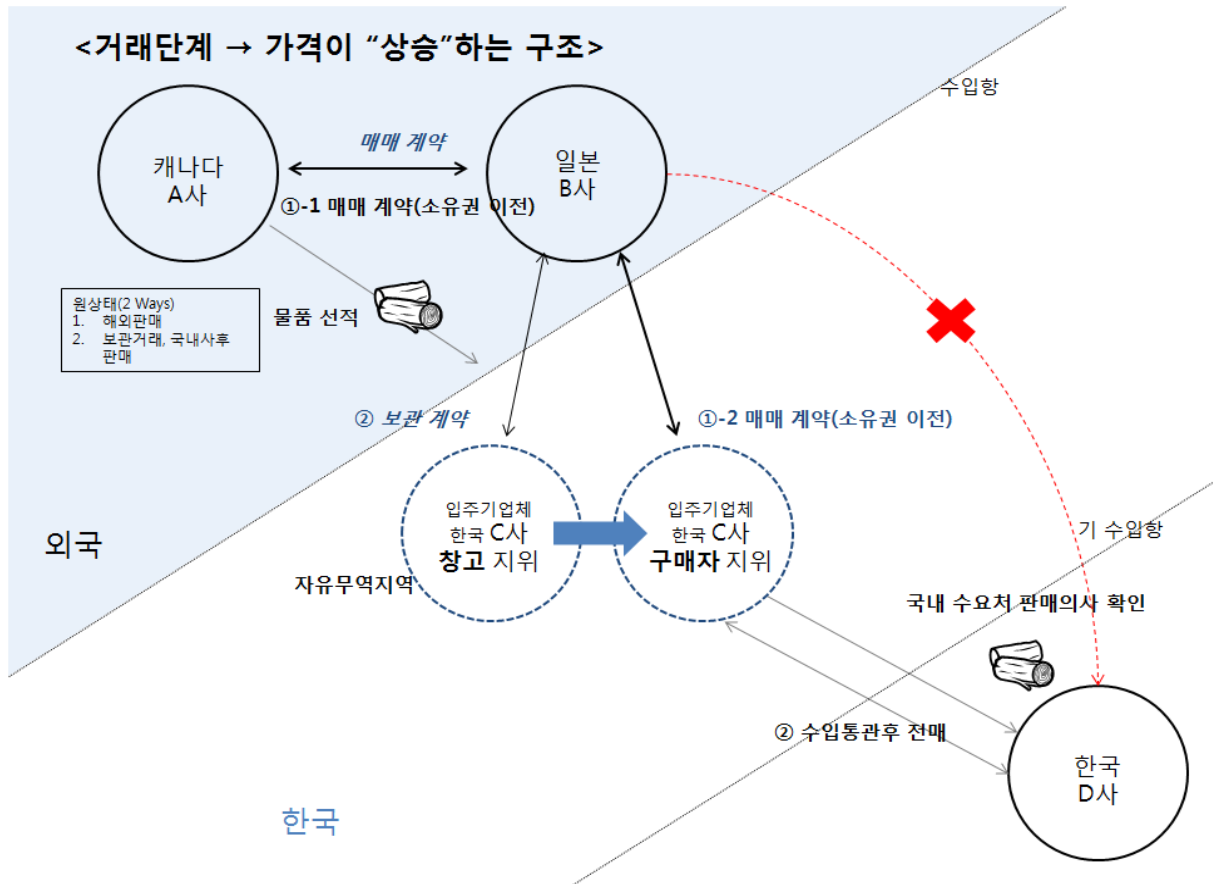
3. 시행일자 : 2015. 11. 16.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mailto:isyoo@customsservice.co.kr)

<<신한's Opinions>>

이사화물 자동차 과세가격은 사용기간의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결정합니다. 현 고시상 입국일까지의 사용기간을 체감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시기) 규정과 불일치함으로 관련 고시 규정을 관세법과 동일하게 사용기간을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로 수정 하였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원상태 반출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2015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 안건)



I. 사실관계

(1) 캐나다 A 사가 선적한 목재를 일본 기업(이하 "B 사")이 한국 자유무역지역에 위탁 보관하다가 한국기업(일본 기업 B 사의 외국인투자 한국법인, 이하 "C 사")이 구매하여 수입신고를 한 후 이를 국내 판매

① A 사와 B 사 가격 : 사용소비신고 가격(제 3 자 가격, CIF 가격)

② B 사와 C 사 가격 : ①가격 + 국내 보관 작업 등 제반비용 + B 사 이익

③ C 사와 D 사 가격 : ②가격 + 통관 등 제반비용 + C 사 이익

(2) 위탁보관의 경우는 국외반출을 하여야 업무가 종결되므로 국외반출시까지의 보관 및 작업 등 보관상 발생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C 사가 관리책임이 있음

(3) 국내판매의 경우는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판매계약 체결시점에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이 한국기업에 있음. 이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위탁보관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됨

- 국내 D 사로의 판매결정시 매매 당사자 : 한국 C사와 국내 D사
- 한국내 소비자(D사)와의 계약진행 형태 : 한국 C사가 컨택. 진행

II. 쟁점사항

자유무역지역에 위탁보관하기 위하여 반입된 외국 물품을 제조·가공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당시의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 관세지역으로 반출·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III. 결정내용

(1) 요지

자유무역지역에 보관중인 물품의 소유자인 일본 B사가 자유무역 입주기업인 한국 C사에게 판매하는 것은 국제간의 이전거래가 없어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 31에서 제 35 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2) 근거

WTO 협정 제 1 조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 소재한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본 B사는 수입국 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될 수 없고 결국 일본 B사가 판매자, 한국 C사가 구매자의 위치를 가지게 됨

WCO 권고의견 1.1 을 보면 판매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판매로 볼 수 없는 여러 사례를 들고 있고 그 중 하나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며 이는 쟁점거래와 유사함. 즉, WCO 권고의견 14.1 및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경우’는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전에 해당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기 위한 거래는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전에 해당하는 거래지만 소유권 이전 및 대금지급 없는 위탁보관거래로서 판매가 없고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거래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출하는 거래는 물품의 국제간 이전이 없어 수출거래가 아님

상기 기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을 물류기지로 삼아 수입항 도착 후 가격이 형성되는 거래는 한국으로 수출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수입항 도착 전까지 판매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 C사가 주도적으로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고 있더라도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 2 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IV. 추가의견

(1) 2012년 제 1 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국으로 보고 제 30 조 내지 제 35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는 과세가격결정고시 제 5-7 조가 아직 유효하지만

구 자유무역지역법(제 6842 호) 제 32 조제 2 항이 폐지되어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 등을 거친 물품만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하에서, 동 고시 규정은 입법미비(미개정)에 해당하므로, 동 고시규정을 근거로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의 반입을 수출판매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 32 조 제 2 항

원상태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본다는 조항 (법령 개정(제 7210 호)에 따라 삭제됨)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때의 원상태 그대로 국내로 수입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기 위한 외국 수출자의 수출판매가격이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 수출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 2 평가방법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병 관

bkpark@customsservice.co.kr

신한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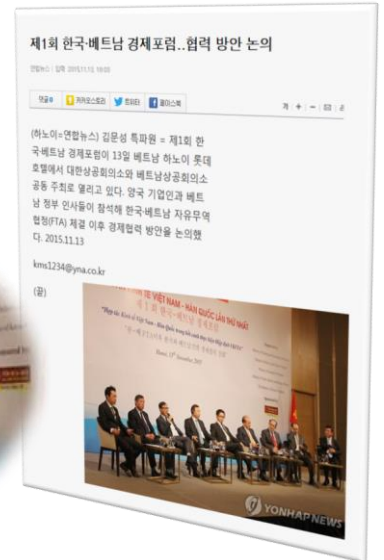
한국 · 베트남 경제포럼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이사 강연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이사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베트남 상공회의소 공동주최 '제 1회 한국-베트남 경제포럼'에서 베트남 부총리, 대한민국 전대주 대사, MPI 차관, MOIT 차관, 베트남상의회장, 대한상의 부회장 등 그 외에 경제전문가, 기업협회 대표, 양국의 경제인들과 함께 한국-베트남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패널 참석 및 강연을 하였습니다.

최대규 이사는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베트남의 FTA를 활용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강연을 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 관련 기사

-'베트남 부총리 "경영환경 개선..한국, 투자 확대해달라"'
-'제 1회 한국-베트남 경제포럼..협력 방안 논의'



ABOUT WRITERS

COVER STORY -

2015년 관세무역 관련
 10대 뉴스

FTA News-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Case Analysis of

Customs Valuation ㉞

자유무역지역 원상태 반출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김혜란 관세사
hrkim@customsservice.co.kr



이동현 관세사
leedh@customsservice.co.kr



유입세 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



박병관 관세사
bkpar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 관세 자문 부문
- 외환 컨설팅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 원산지관리사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글로벌 자문 부문
- HS 품목분류 컨설팅
-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자문 컨설팅
-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리 컨설팅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건설/기계 통관 및 품목분류 전문
- 환급컨설팅 전문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 관세 자문 부문
- 前 무역상사 해외영업부 (2004-2012)
- 섬유/의류 통관 및 품목 분류 전문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